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사항 안내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제정·시행된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 수입 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신고 대상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2-33호)에 따라 HS CODE 제3102.10-9000호로 수입되는 요소와 요소수

II. 신고 관련사항

1. 신고내용

아래 내용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관련내용을 신고

	요소	요소수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신고기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ask16707072@korea.k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
참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지사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21.11.16)	환경부(me.go.kr) 공지-공고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21.11.11)
문의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한국환경공단
		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2. 시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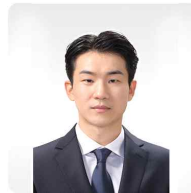
2021.11.11. ~ 2022.3.31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70-4353-1587
E djkim@esein.co.kr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